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5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민홍철·문대림·이기헌

조 국・이성윤・한정애

손명수 · 김준혁 · 복기왕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 근로시간, 휴일,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난 임치료휴가, 가족돌봄휴직·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,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에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자의 휴가·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제4호"를 "제5호"로 한다.

5.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사용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---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출산전후휴가 · 육아휴직 등 <신 설>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・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5. (생략)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 련한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 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)을 근로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 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

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	
교부하여야 한다.	<u>.</u>